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감경 6%,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기관 내부 게시

방문요양	'25년수가	본부금15%	'26년수가	본부금15%	본부금9%	본부금6%	본부금기초
30분	16,940	2,540	17,450	2,617	1,570	1,047	무료
60분	24,580	3,680	25,320	3,798	2,278	1,519	무료
90분	33,120	4,960	34,120	5,118	3,070	2,047	무료
120분	42,160	6,320	43,430	6,514	3,908	2,605	무료
150분	49,160	7,370	50,640	7,596	4,557	3,038	무료
180분	55,350	8,300	57,020	8,553	5,131	3,421	무료
210분	61,670	9,250	63,530	9,529	5,717	3,811	무료
240분	68,030	10,200	70,080	10,512	6,307	4,204	무료

방문목록	구분	'25년수가	'26년수가	15%	9%	6%	기초
	차량이용 (차량 내)	86,480	88,990	13,348	8,009	5,339	무료
	차량이용 (가정 내)	77,970	80,230	12,034	7,220	4,813	무료
	차량 미이용	48,670	50,100	7,515	4,509	3,006	무료

5. 계약자 및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8)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